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60 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상훈·구자근

김위상 · 김성원 · 송석준

최보윤 • 정동만 • 김소희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,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5항·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국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0조(특화특구에 대한	책무와	제20조(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
지원 등) ① ~ ④ (생	략)	지원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	승)
<u> <신 설></u>		⑤ 국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
		치단체는 특화사업의 육성을
		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
		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	⑥ 국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
		치단체가 제5항에 따라 재정지
		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
		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
		<u>여야 한다.</u>